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9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8년 10월 17일
- 회 부 일 : 2018년 10월 29일

## 2. 제안이유

-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재산이 예술품등인 경우에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매각기관 및 대상기관의 선정과 예술품등의 매각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추가하고 약칭을 정비(안 제2조)
- 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조항 14개 신설
  - (1) 시장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고,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공모절차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음(안 제6조)
  - (2) ‘대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대상기관’의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4) ‘대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기관’의 선정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함 (안 제9조)
- (5) 대상기관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6)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인에게 평가 의뢰를 할 수 있음(안 제11조)
- (7)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8) 매각재산의 인도·수령·배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
- (9) 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10) 전문매각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안 제17조)
  - (가)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지출이 과다한 경우,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그 밖에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 (나)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과정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고,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의 책임이 있음(안 제18조, 안 제19조)

다. 기존의 제6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를 제20조로 변경(안 제20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18. 8. 2. ~ 8. 22.) 결과: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가. 입법배경 및 필요성

- 본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은 압류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의 이유로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물품(예술품 등)의 경우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 징수법」(제7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74조의2)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및 대상기관의 선정과 예술품등의 매각에 필요한 절차 등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지방세징수법('17.12.26.개정, '18.3.27.시행) >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18.3.27.개정·시행) >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 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

이지에 공고한 기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③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현행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복잡하게 규정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집약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으로 분법되면서<sup>1)</sup> 법의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총 7개 조항으로 2017년에 제정·시행하여 왔으며,

금번 전부개정을 통해 현행 제6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와 제7조(시행규칙)를 각각 제20조와 제21조로 하고, 제6조 부터 제19조 까지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 등 14개 조항을 다음의 표와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1) 「지방세징수법」 입법 배경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 등 14개 조항 신설(§6~§19) >

조 항	내 용
§6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전문매각기관 및 대상기관의 선정
§7 (대상기관의 선정)	대상기관 신청서류 및 선정 시 시보·시 홈페이지 공고
§8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등)	1차 서류심사(업무소관 부서장), 2차 심사(위원회)
§9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위원장(재무국장), 위원 시 소속 과장급 6명으로 구성
§10 (대상기관 선정 취소)	부도, 파산 등 업무수행 곤란, 중대한 범죄행위 등
§11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필요한 경우 감정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1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3회 이상 경매 실시 또는 1년 경과 미매각시 해제요청
§13 (매각재산의 인도)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 시 매각재산 인도 및 인수증 수령
§14 (매각대금의 수령)	매각수수료 적정여부 확인 및 수수료 차감 금액 수령
§15 (매각대금의 배분 등)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매각대금 배분 및 체납액 총당
§16 (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 청구
§17 (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과다한 체납처분비 예상,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등
§18 (비밀유지 등)	매각대행 시 알게 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19 (배상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발생 시 배상 의무 규정

- 법 개정 취지는 압류한 재산의 매각 시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압류재산 중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 등에 대한 공매에 있어서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매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 「국세징수법」의 경우에도 현재도 본 개정안과 동일한 규정을 두어<sup>2)</sup> 압류한 예술품 등의 경우 세무서장이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는 41점의 미술품을 압류하고는 있으나, 공매실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적으로는 가치평가가 쉽지 않고 수요도 제한되어 있는 예술품 등의 경우 전문기관에 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수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음.

※ 미 술 품: 54,900,000원(37점, 체납자 보관 중 분실 4점)

- 감정완료 37점 중 25점 감정가격 있으며, 12점은 감정가격 0원임.

※ 압류 후 체납자 보관 중에 분실된 4점은 체납자가 경찰수사 의뢰하여 수사 중이므로 결과에 따라 처리 검토

## 나. 세부 내용 검토

- 안 제6조는 최근 2년 동안 경매를 통해 매각한 횟수가 10회 이상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여(안 제6조제2항)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안 제6조제1항)으로,

---

2) 「국세징수법」 제6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국내에 예술품 관련 경매회사가 많지 않으나,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예술품을 매각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사항으로, 국세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기준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전문매각기관 선정 자격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여짐.

<2017년 국내 예술품 경매회사 경매실적>

(단위 : 건)

연번	경매회사	소재	2017년 경매 실적		
			오프라인	온라인	합계
		합계	31	129	160
1	꼬모옥션	서울 강남구	-	11	11
2	케이옥션	서울 강남구	7	58	65
3	서울옥션 블루	서울 강남구	-	미공개	-
4	아이옥션	서울 종로구	8	11	19
5	마이아트옥션	서울 종로구	5	-	5
6	서울옥션	서울 종로구	7	-	7
7	칸옥션	서울 종로구	4	-	4
8	인사고경매	서울 종로구	-	1	1
9	헤럴드아트데이	서울 용산구	-	12	12
10	에이치옥션	경기 의왕시	-	11	11
11	에이옥션	전북 전주시	-	17	17
12	토탈아트옥션	충북 충주시	-	8	8

※ 한국미술시장 정보시스템 및 각 회사 홈페이지 자료 발취

- 안 제7조(대상기관의 선정), 안 제8조(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안 제9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안 제10조(대상기관 선정 취소)는 공고, 서류제출 및 매각기관 선정심사를 1, 2차로 구분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심사 및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각업무 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및 취소하도록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안 제9조제2항의 ‘대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서울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6명을 위원으로 하여 외부위원 및 전문가 없이 내부 위원 7명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11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안 제12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안 제13조(매각재산의 인도), 안 제14조(매각대금의 수령), 안 제15조(매각대금의 배분 등), 안 제16(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 안 제17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안 제18조(비밀유지 등), 안 제19조(배상책임)의 규정은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지방세특례제도과-1612, 2018. 5. 11.)에 따라 효율적인 매각 업무수행과 전국적 통일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매각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법 시행령 제74조의3<sup>3)</sup>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본 개정안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안 제11조의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안 제16조제2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안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및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본 조례 제정 당시 부칙에 있던 사항으로 본 개정안이 전부개정안으로 제출됨에 따라 기존 「시세 기본 조례」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성 해소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해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18.3.27.개정·시행) >

**제52조의3(매각대행 수수료)영 제74조의3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 <신설 2018. 3. 27.>

수수료(제52조의3관련)

1. 매각 수수료

매각 수수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공매진행단계별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최저 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구분	기준금액	공매진행단계	수수료율	최저 수수료
가. 법 제85조제1항 또는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납부세액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	공매공고 전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0.6% 0.9% 1.2%	12만원 18만원 24만원
다.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해당 매각금액	-	3.0%	30만원
라.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매수대금	-	1.2%	24만원

비고:

1.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2.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되거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보전 수수료

보전수수료는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위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석 훈
------	-------	-------	-------